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 2026. 9. 23.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제안배경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서초복지돌봄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7년도 보통재산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의결 요청사항 :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및 제12조(출연금의 교부)

다.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복지·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민·관 복지협력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등 주민 체감형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지원이 필요함

3. 출연금 산출내역

○ 보통재산 : 1,440,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7년(안)	주요내용
합계	1,440,000	- 보통재산 출연금 10% 감액
인건비	764,150	-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운영비	539,850	- 시니어플라자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운영비 상승
사업비	136,000	- 사업 재구조화 및 후원금재원 연계추진 등 ● 효도버스 사업종료(△404,265)/통합버스 추진 ● 총사업비 2,125,910천원 중 출연금 136,000천원, 후원금 및 자부담 1,989,910천원임

※ 2026년 보통재산 출연금 1,600,000천원 대비 160,000천원(10%) 감액

4. 출연기관 참고사항

○ 출연시기 : 2027년 중 분기별 교부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위치 : 서초시니어플라자 4 · 5층 (방배중앙로 118)

○ 조직인력 : 이사회 10명, 감사 2명, 사무국 3개 팀(정원 20명, 현원 15명)

※파견공무원 2명 포함

○ 주요방향

복지의 공공성 실현	■ 서초형 복지 돌봄 특화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ZERO 관계망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 일상 속 기부 · 나눔 문화 확산	■ 민 · 관 ·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미래	■ 지역 복지 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스마트 경영시스템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청렴 · ESG 경영체계 강화

○ 2027년 주요 추진계획

-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확대(서초ON돌봄 4대 케어, 돌봄쉼표)
- 주민 체감형 신규 특화사업 추진(서초ON복지콜센터, 서초 병원택시)
- 방배마을이음단 운영 및 방배돌봄허브 실행체계 마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제12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